목포시국내・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40

제출년월일 : 2003. 11. 제 출 자 : 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○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, 타 지역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투자유치자문관 신설 (안 제6조)
 - 국내 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
 -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 컨설팅 수수료등 필요한 경비 지급
-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지정 (안 제17조)
 - 각종 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 대상
 -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 국인투자
 -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
 -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
 -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함
 -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금액은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•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 지원
-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(안 제22조)
 - 기금은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음
 - 기금재워 조성
 - -전라남도 및 시·군의 출연금
 - -기금운용 수익금
 - -기타 수입금
 - 출연금은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

수 있음

- 기금의 용도 (안 제23조)
 -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
 -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
 - 컨설팅 수수료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 지원
 -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
 -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기금의 관리 및 운용 (안 제24조)
 - 전라남도국내 · 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를 적용
- 지원의 취소 및 반환내용 변경 (안 제29조)
 -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임대 및 분양계약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취소 및 반환 ⇒ 3년 이내로 변경
 -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 하지 않는 경우 지원취소 및 반환 ⇒ 1년 이내로 변경
 -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내용 삽입
- 3. 개정조례안 : 별 첨
- 4. 신·구문대비표 : 별 첨
- 5. 관계법령
 - 외국인투자촉진법
 -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- 6. 관련부서 의견: 해당없음
- 7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- 8. 입법예고 결과
 - 기 간 : 2003. 9. 29. ~ 2003. 10. 21.
 - 결 과 : 의견없음
- 9. 사전 협의사항 : 해당없음
- 10. 기타 참고사항: 해당없음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중 "법 제2조제1항제6호"를 "법 제2조제1항제4호"로 한다.

제6조 내지 제15조를 제7조 내지 제16조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투자유치 자문관) ①시장은 국내·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목포시 투자유치자 문관(이하 "자문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.

제17조제1항중 "타지역 소재 공장의 시내유치"를 "전라남도외 소재 공장유치"로 하며, 동조 동항 제1호중 "산업단지"를 "산업단지 및 농공단지"로 하고, 동조를 제19조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) ①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 .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
- 2.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 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
- 3.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. 단,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 과하지 못하며,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.

- 제18조중 "제8조 내지 제11조"를 "제10조 내지 제13조"로 하고, 동조를 제20조로 하다.
-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.
-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.
- 제20조를 제25조로 한다.
- 제21조중 "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"를 "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,"로 하고, 동조를 제26조로 한다.
- 제22조를 제27조로 한다.
- 제23조제4항중 "10년이내에"를 "매입계약후 10년이내에"로 하고, 동조를 제28조로 한다.
- 제24조제4호중 "2년"을 "3년"으로 하며, 동조 동항 제5호중 "2년"을 "1년"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를 제29조로 한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.
- 제5장을 신설하고, 동장에 제22조 내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
- 제22조(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-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전라남도 및 시·군의 출연금
 - 2.기금운용 수익금
 - 3.기타 수입금
 - ③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- 제2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
 - 1.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
 - 2.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
 - 3.컨설팅 수수료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
 - 4.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
 - 5.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24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전라남도국내·외기업및자본 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를 적용한다.
- 제25조를 제30조로, 제26조를 제31조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신・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"외국인투자"라 함은 <u>법 제2조제1항제 6호</u> 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. 2. ~ 4. (생 략) 제6조 ~ 제15조 (생 략) <(신 설)	제3조(정의)
<u>〈신 설〉</u>	자문관(이하 "자문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제17조(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) ①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.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
	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.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

현 행	개 정 안
	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. 단,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.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,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.
제16조	제18조
제17조(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) ①시장은 <u>타 지역 소재 공장의 시내유</u> <u>치</u> 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1.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 여 조성된 산업단지 2. (생 략) ② (생 략)	제19조(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) ① 전라남도외 소재 공장유치
제18조(국내기업 지원의 준용) 시장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	<u>제20조</u> (국내기업 지원의 준용) <u>제10조 내지 제13조</u>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	제21조
<u>〈신 설〉</u>	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
<u>〈신 설〉</u>	
	제22조(투자유치진홍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의거 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다.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 1.전라남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2.기금운용 수익금 3.기타 수입금 ③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_〈신 설〉	제2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 1.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.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.컨설팅 수수료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 비의 지원 4.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.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<u>〈신 설〉</u>	제24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 유치를위한조례를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u>제5장 보 칙</u>	제6장 보 칙
제20조	제25조
제21조(전략산업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다.	<u>제26조(</u>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) <u>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</u> 하여 지원하되,
제22조	제27조
제23조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 ① ~ ③ (생 략) ④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 매입계약후 5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, 10년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 ⑤ (생 략)	<u>제28조(</u> 투자기업의 사후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
제24조(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) (생 략) 1. ~ 3. (생 략) 4.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 니한 경우 5.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. ~ 8 (생 략)	제29조(자원의 취소 및 빈환등) ①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 5 6. ~ 8 (현행과 같음)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.
<u>제25조</u>	제30조
제26조	제31조